## 대주주의 요건(제10조제4항 관련)

	-
구 분	
1. 대주주가 「금	가. 최·
융위원회의 설	을 백
치 등에 관한	려는
법률」 제38조	준을
에 따라 금융감	나. 해
독원의 검사를	금융
받는 기관(기관	다. 해
전용 사모집합	따른
투자기구는 제	등"
외하며, 이하 "	금융
금융기관"이라	열"여
한다)인 경우	기업
	현재
	나눈
	에서
	원회
	-1 ->

## 요 건

- 가.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(이하 "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"이라 한다)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- 나.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- 라.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
- 마.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. 다만,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1)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「조세범 처벌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 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
- 2)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
- 3)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실금융기 관으로 지정되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·인가 또는 등 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. 다만,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
- 4)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
- 경우
- 2. 대주주가 제1 가.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이 출자하려 호 외의 내국법 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인(기관전용 사 기준을 충족할 것
  - 모집합투자기구 나.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와 투자목적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  - 사는 제외한다. 다.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거나 주채무계 이하 같다)인 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
    - 라.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
- 인 경우
- 3. 대주주가 내국 가.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 각 호의 인으로서 개인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
  - |나.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
- 인 경우
- 4. 대주주가 외국 가. 허가신청일 현재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을 것
  - 법령에 따라 설 나.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이 출자하려 립된 외국법인 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(이하 "외국법 기준을 충족할 것
  - 인"이라 한다) 다.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 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해당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 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
    - 라. 최근 3년간 금융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속 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상당하는 행 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
    - 마.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

5. 대주주가 기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전용 사모집합|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(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기구 또는 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투자목적회사인 정관, 투자계약서, 확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는 제외하 다)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

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

- 가.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: 제1호나목·다목 및 마목의 요 건을 충족할 것
- 나. 제2호의 내국법인인 경우: 제1호마목 및 제2호나목·다목 의 요건을 충족할 것
- 다. 제3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: 제1호마목 및 제3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
- 라. 제4호의 외국법인인 경우: 제1호마목, 제2호나목(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) 및 제4호다목·라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

## 비고

- 1. 재무상태표상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허가신청일 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.
- 2. 위 표 제4호를 적용할 때에 대주주인 외국법인이 지주회사여서 위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허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(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)가 위 표 제4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.
- 3. 위 표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목적회사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것을 말한다.